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

(2025.11.25)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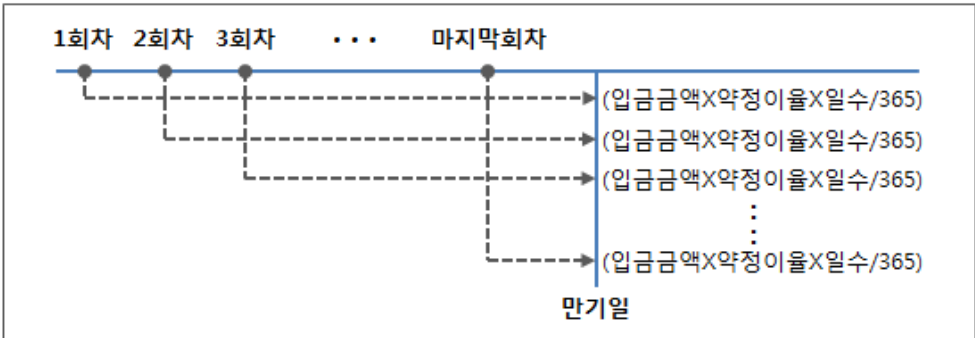
1 상품 개요 및 특징


- ▶ **상 품 명** : 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 **상품특징**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무원, 대체복무요원 등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예금

2 거래 조건

이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실명의 개인으로서 가입시점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무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하며, 역종변경자의 가입자격은 "사회복지무원"으로 한다 · 제출서류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가입제한	1인 1통장 가입 가능				
계약기간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일 단위)				
만기일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상의 전역(소집해제)예정일 (단, 대체복무요원은 전역(소집해제)예정일 또는 가입후 만 24개월 경과시)				
저축방법	월부금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 원 단위 (자유적립식)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취급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55만원을 초과하여 적립 불가)				
월 납입한도 변경	2025년 1월 1일 이전 상품 가입 및 월 불입 한도인 20만원 이하로 설정된 경우 저축한도(세금우대 한도) 상향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거래는 5만원 단위로 1회만 가능하며 변경 거래 완료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기본이율 (연%, 세전)	□ 기본이율				
	저축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연이율	3.00%	3.70%	4.50%	5.00%
※ 가입시 적용이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p>우대이율 (연%, 세전)</p>	<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에 따른 우대이율</p> <table border="1" data-bbox="375 147 1476 293"> <thead> <tr> <th>제공조건</th> <th>우대이율</th> </tr> </thead> <tbody> <tr> <td>가입일 현재 예금주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을 보유중인 경우</td> <td>0.1%</td> </tr> </tbody> </table> <p>※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 해지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p>	제공조건	우대이율	가입일 현재 예금주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을 보유중인 경우	0.1%						
제공조건	우대이율										
가입일 현재 예금주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을 보유중인 경우	0.1%										
<p>최종이율 (연%, 세전)</p>	<p>최저 연 3.10% ~ 최고 연 5.10% ☞ 최고이율은 가입기간 15개월 이상, 우대이율 모두 적용시</p>										
<p>이자지급방식</p>	<p>만기일시지급식(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p>										
<p>이자계산방법</p>	<p>월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자계산 예시></p> 										
<p>중도해지이율 (연%, 세전)</p>	<p>☐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 ※ 적용율</p> <table border="1" data-bbox="395 1238 1437 1473"> <thead> <tr> <th>가입기간</th> <th>적용율</th> </tr> </thead> <tbody> <tr> <td>6개월 미만</td> <td>50%</td> </tr> <tr> <td>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td> <td>70%</td> </tr> <tr> <td>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td> <td>80%</td> </tr> <tr> <td>11개월 이상</td> <td>90%</td> </tr> </tbody> </table>	가입기간	적용율	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70%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80%	11개월 이상	90%
가입기간	적용율										
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70%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80%										
11개월 이상	90%										
<p>만기후이율 (연%, 세전)</p>	<p>☐ 만기후 이율</p> <table border="1" data-bbox="370 1534 1473 1794"> <thead> <tr> <th>경과기간</th> <th>이 윣</th> </tr> </thead> <tbody> <tr> <td>만기후 1개월 이내</td> <td>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td> </tr> <tr> <td>만기후 1개월 초과</td> <td>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이 윣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만기후 1개월 초과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경과기간	이 윣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50%										
만기후 1개월 초과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일반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기본이율 X 20%										
<p>세율의 적용</p>	<p>○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 초과 불가 •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	O	예금잔액 100% 범위 내 가능
자동재예치	X	불 가
자동만기해지	X	불 가
분할해지	X	불 가
만기앞당김	X	불 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양도 및 질권설정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만기 후 처리방법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출연된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월 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 (자동이체 등록은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가능하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통장거래	통장 신규시 종이통장 발행 여부 선택 가능	
계약의 신규	▶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규 가능 · 인터넷뱅킹, 모바일 웹 등의 비대면채널을 통한 신규 불가	
계약의 해지	▶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인터넷뱅킹, 모바일 웹 등의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위법계약 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 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2021.10.14 병역법 개정되어 법 개정 이후 만기도래 계좌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기존계좌 소급적용 불가)

☞ 1%이자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는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이자지원금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유의)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불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1%이자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p>※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고객 포함 (조기전역 · 의병전역의 경우에도 신규 시 약정했던 만기일을 복무종료일로 보며, 약정 만기일에 해지 하여야 '1%이자지원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 (단,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가능) </div>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신규일부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0%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부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 입금금액 건별로 원 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 미만 절사
알아두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 계좌는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이 일치할 것.(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역 · 조기전역 의병전역 등의 경우도 신규 시 약정했던 만기일에 해지하여야만 '비과세' 혜택 가능). · 대체복무요원에 한해, 복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에서 발급한 '복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1% 이자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복무 중 만기가 아닌, 그 외 만기 시에는 복무사실확인서 외 서류(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로도 해지 가능합니다) ·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 병역증 · 병적증명서 · 복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전역증 · 병역증 · 병적증명서 ·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이자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매칭지원금**

구 분	내 용
매칭지원금 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지원금입니다.
지급주체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
지급대상	1% 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
지급 비율(금액)	*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납입 원금 + 은행 이자 +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납입 원금 + 은행 이자 +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시기	해지일의 익월 말 ※단, 현역병 복무 중 역종 변경자(현역병->사회복무요원)의 현역병 신분에서 가입한 적금의 지원금의 경우는, 신청은 현역병 복무만료시 하되, 지급은 사회복무요원(역종변경신분) 복무완료 후 국방부로부터 최종 지급
알아두실 사항	(1) 매칭지원금 입금 계좌(당행 계좌)에 대해 입금 제한사항(압류, 사고 등록)등이 있을 시 매칭지원금은 지급 불가하므로, 가급적 상품 해지 후 3개월 이내에는 입금희망계좌의 해지 또는 입금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 매칭지원금은 만기 해지시 인자되는 영수증을 통해 예상 금액 확인 가능하며 기타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은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병무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 **유의 사항**

-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며, 기 가입 된 경우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명의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을 한번이라도 만기 해지한 고객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BNK경남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이 상품은 경남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